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1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7)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5)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2)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7)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2970)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3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3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3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

상정된 안건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5
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5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5
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5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7)	5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6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5)	6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2)	6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6
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6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6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	6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7)	6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6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6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6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6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6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6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6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	6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6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6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908)	6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6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6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7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7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7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7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7
3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7
3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7
3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7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7

(14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찬대 위원님과 또 국민의힘 이양수·추경호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은 오늘 출석을 안 하셨고요.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모세혈관, 금융에 관해서 또 공정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좋은 법안 잘 심의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양수 위원님 인사……

○이양수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추경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회의에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6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려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부위원장 새로 임명됐는데 인사말 간단히 들으시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그럴까요?

○추경호 위원 1분 내로.

○소위원장 강준현 그렇게 하시지요.

신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강준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7)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5)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2)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7)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3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3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3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14시11분)

○**소위원장 강준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그다음에 기금채권 발행, 기금의 관리·운용·용도, 기금운용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입니다.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기금을 신설을 해서 1번에 있는 대상에 대해 재원은 정부 보증 기금채, 산은 자체재원을 활용한 기금 출연을 병행하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개요도는 5페이지 좌측에 돼 있습니다.

기금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자금지원이 가능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여신한도, 위험가중치 부담, BIS 등 건전성 규제로 인해 대규모 금융지원이 어려운 반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를 증가시키고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예산 당국이나 국회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자금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고,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이 있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하거나 첨단전략산업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입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현재 산업은행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체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특별한 의견이 없고, 참고로 이 법안은 금년 3월에 정무위 최초로 여야 공동 발의된 법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관세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 관계없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지금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핵심광물 확보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희토류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광물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 수요가 급증하는데 부위원장님, 국내 광물 수요 95%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이게 매우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트럼프 2.0 정부가 들어와서 결국 중국이 희토류나 핵심광물을 뭉으니까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도 빨리 이걸 확보해야 되고 취약한 구조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첨단전략기술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핵심 광물을 비롯한 주요 원재료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공급하는 기업들 역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당연히 이차전지에는 수소, 리튬이나 니켈 이런 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의 취지에 보면 당연히 지원 대상의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이번 법안소위에 올라온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 기업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본 위원의 제안은 부대의견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핵심광물 공급 기업을 첨단전략산업기업으로 명시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하나의 제안이고.

둘째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당 조항을 통 개정안의 제29조의9 2항 4호에 명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핵심광물.

부위원장님, 정부 측 생각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지금 법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앞으로 유연성 있게, 특히 시행령을 통해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를 좀 반영을 하도록 하고 미리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간사님,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예,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부위원장님, 지금 수출입은행법 안에 공급망 관련한 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5조였다가 아마 10조로 늘려 놨을 거거든요. 그게 지금 10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민국 위원님 걱정하시는 핵심광물 희토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금의 성격상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에 그 기금을 갖춰 놨으니 필요하다면 그 기금을 좀 더 증자하든지 규모를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하고 지금 현재 기재위에 핵심광물 희토류 관련한 국가전략자원 확보하는 부서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봐서 정부 측에서 그걸 공급망안정기금 쪽에서 처리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급망안정기금이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선도기업 100개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측 생각은 이 공급망안정기금과 첨단전략산업 자체, 두 개를 잘 조율을 하면서 이 업무를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제 판단은 강민국 위원님 의견의 부대의견을 주시면서 유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두 개의 기금을 잘 조율해서 해라 이렇게 정부에게 미션을 주시면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간사님, 팬참으시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대영……

말씀 있으세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이어서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이번 마치고 다른 내용으로……

○**이강일 위원** 이 법안……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약간 유사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게 국민펀드하고 연계되면 이제 우리나라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어떤 중요한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펀드 취지를 고려한다면 집중투자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투자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원 범위가 좀 확대돼야 되는데 법마다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약간씩 달라요. 제가 보니까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그다음에 국가자원안보법에 보면 핵심자원 돼 있고요, 방산기술보호법상의 방위산업기술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법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 산업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될 정도로 우리 산업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게 좀 광범위하게 해서, 강민국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 데요 다 골고루 잘 지원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다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취지는 아마 정부 측에서도 백번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조문에 있어서 중복해서 규정되는 일이 없게 잘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지금 3항에,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경제안보가 아까 공급망 그리고 희토류 등등 이쪽 원료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첨단산업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여기에도 또 그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백번 살리고 혹시 조문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보완을 하되 만약에 다 포섭이 되면 같은 내용이 여러 타 법에 중복해서 가지 않고, 특히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망 기업들이 역시 중요한 산업기업으로 이 정부의 중요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대안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산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중보다는 유리한 조건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불확실한 투자 유치가 어려울 때 투자를 견인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의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좀 큰 이야기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기업에 또는 특정 산업군에 지원을 할 때 간혹 WTO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늘 유의해서 하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특정 업종이 중요하다고 급해서 갔는데 나중에 결국은 WTO 규정 위배 때문에 또 국제통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를 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공공부문이 직접 관여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산업경쟁력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다 거르게는 돼 있는데 결국은 정부, 공공부문이 특정 기업 또 분야에 일종의 체리피킹하듯이 선별 작업에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느 기업에 이런 유리한 조건의 투자나 대출 등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나중에 정부의 관여로 인한 여러 가지 특혜 등등에 관한 시빗거리가 늘 있을 수 있고 또 당시에는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 집행이나 선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유리한 조건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사실은 시장 선별을 통해서 투자 대상이 정해지고 자금 지원 대상이 정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공공부문의 손을 빌리려는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비효율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시장의 생태계,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치열하게 선별하는 그 기능이 저해되면서 투자 대상이 선별될 수도 있고 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늘 유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세금이 직간접으로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국회도 감사원도 정부도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후감사 또 더 나아가서 국정감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모험적으로 투자를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위축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창대하게 가는 데 결국은 일종의 공기업에 병리현상이 나타나듯이 여기도 그 가능성성이 없지 않다 이런 우려사항을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고 집행하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게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확대 부분하고 같이 연계됩니다만 이 부분에서 일종의 하나의 큰 자금 공급 채널이 마련되면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의 크기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 기왕에 국책기관이 하던 기능을 기금을 통해서 전환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해야 되고 또 거기도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마 추경호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이 대한민국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아마 한 치의 소홀함이 없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국회와 상의를 좀 드리고 이 분야가 당초의 목적에 충실히 집행되고 구성되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관련해서,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2조 특례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 뒤에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 박범계 위원**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몰라 가지고, 여기 나오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언제 통과된 겁니까?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3년에 통과돼서 24년부터 구성됐습니다.
- 박범계 위원** 재작년에 통과됐군요, 윤석열 정부에서?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 박범계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4년에 5조 원이고요 25~27년에 매년 10조 원 해서 총 35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동수 위원** 기간기금은 코로나 때 만든 거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죄송합니다. 기간기금은 코로나 때 항공사나 이런 쪽을 위해서 만든……
- 유동수 위원** 20대 국회 마지막에 한 거예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죄송합니다.
- 박범계 위원** 좀 오래됐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올해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어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020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40조 원 규모로 돼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적지 않은 규모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 박범계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전략산업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 기금 설치와 관계없이?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은 이미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가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이 기금의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첨단전략산업기술로서 보호돼야 되고 지원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철학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지요, 이견이?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정부보증채지요, 이게?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 박범계 위원** 그러면 주채무자는 산업은행이 됩니까?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러면 정부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산업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여기 지금 일부 부정적인 의견 중에 국가채무로…… 당연히 산업은행 채무가 되니까 국가채무는 아니겠네요, 공공채무일지언정.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산업은행이 부도나게 되면 국가가 보증하니까 국가채무가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까, 산업은행이? 없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없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앞으로 그러면 부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산업은행이 부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IMF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없었지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재무건전성 소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것은…… 이 기술에, 이 산업에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필요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약하고 그래서 아마 대규모의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본 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문외한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이 도움이, 아무래도 실물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니까……

소위 여기서도 모럴 해저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있겠네요.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기금 자체가 정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도 좀 하고요 민간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고 또 국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선별해 준 분야에, 정부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마 그런 선별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으로 보이고 시장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정부가 일종의 모럴 해저드 그런 측면이 설사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민간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곳에 자금 지원을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하다 이런 취지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가 무한 경쟁, 특히 패권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국가적인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금융 차원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두 분만 더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분명

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산업은행에 설치는 하는데 그 출자는 산업은행에서……

지금 출자 얼마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한 1조~2조 정도……

○추경호 위원 1조~2조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재원은 기금을 기초로 한 정부보증채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하고 민간자금.

○추경호 위원 여기에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은행은 출자분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 그리고 나머지 기금이 전부 손실이 있으면 정부가 보증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결국은 보증채무의 책무를 지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단절을 시켜……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자칫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산업은행의 전체 자본·자산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절연이 돼서 기금 출연한 부분 그리고 기금은 기금 그 자체로서 책무를 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정부보증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지 산업은행이 파산이 되고 이런 구조는 아니지 않느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 오해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정부보증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 보증안을 금년에 10조 원 그러니까 1차분 10조 원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0조 원 정도 됩니다.

○유동수 위원 전체적으로 50조를 한다면 어느 정도를 정부보증채를 발행할 생각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5년간 한 50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정부보증에 의한 보증채 발행을 한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게 다 아시겠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걸 자꾸 입법조사…… 저것도 같이 비교해 봤는데 이것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최소한도 기간산업을 보호하자, 굉장히 방어적 측면에서 40조를 발행했고요. 그 당시에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하는 조건 등 몇 개의 굉장히 안정적 조건을 제시를 하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정부에서 7개 업종을 얘기했는데 그때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제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해운하고 항공 이 2개 부문만 한정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혹시 이것도 WTO 제소나 이런 부분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때 선진국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없습니

다.

○**유동수 위원** 그런 것들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공급망안정기금하고 기간기금이 좀 헷갈려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기금은 말씀대로 2020년 5월에 해서 주로 항공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실제 저희가.....

○**유동수 위원** 1조 5000억, 이것 얼마 안 쓰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금액은 40조로 했으나 실제 지원된 것은 8000억이고.....

○**유동수 위원**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썼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년도에는 지금 항공사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유동수 위원** 이번에 만기되지 않나요, 올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올해가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없어질 겁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산업에 대한 안전판으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라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유동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같은 기금으로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 제소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더 추가의견 없으시면.....

○**박범계 위원** 뭐라고 명칭이 돼 있느냐면 정부보증 기금채예요. 그러면 정부보증 기금채면 주채무자가 누구예요? 국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산업은행 채권입니다.

○**박범계 위원** 산업은행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이 2조는 산업은행 자기자본으로 출자하는 거고, 이 채권 발행을 누구의 명의로 발행하나 이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어떤 엔티티(entity)를 만드는 겁니다.

○**박범계 위원** 출자는 2조라는 거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이 기금채를 발행합니다.

○**박범계 위원** 산업은행 안의 법인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산업은행과 절연돼 있는.....

○**박범계 위원** 절연돼 있는 법인, 그러면 그 법인이 주채무자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법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첨단전략산업기금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 기금 명칭대로 그대로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발행을 하되 그것은 주채무자고, 정부가 보증하니까 보증채무자가 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그 기금, 법인이 부도나는 상황이 발생해야지 국가가 보증채무로서 실질적인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이 소위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부도가 나는 사태라는 것은 여기서 만든 50조 원이 완전히 거덜나는, 예를 들어서 소위 국가전략기술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허당이더라 그래 가지고 거덜이 나 버리면, 한 10조를 지원했는데 그것 자체가 0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완전히 부도가 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제 논리구조는 마찬가지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가가 2차적인, 정부가 2차적이라는 측면은 맞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의견 없으시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관련입니다.

기금 재원 관련해서 유사 기금과의 재원을 비교했는데요. 좀 전에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완전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인 체계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해서는 여타 기금과 비슷한데 산업은행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설치될 경우에 산업은행 업무에 기금 관련되는 조항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매회 금액 등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단의 국가재정법 92조를 보시면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항 후단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재위에 이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발행액이 10조 이내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향후 5년간 50조 원의 규모로 채권을 발

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20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용도와 자금지원 절차 관련입니다.

기금은 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21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제29조의9제2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1호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서, 2호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 3호는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상대방, 4호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호와 관련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를 통한 지원 방식이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하는 쪽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단은 금융위 의견인데 좌측 2호에 보시면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이외에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자료 2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관련해서는 국채·공채의 매입, 금융기관 예치 및 대여, 그 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고, 회계의 구분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23페이지에서는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인데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면서, 다만 자금지원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입장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민간 투자자가 SPC, JV 등을 조성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우선매수권 부여입니다.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금지원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는 제29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이 제도는 생태계인데 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 지원도 있고요. 이 돈을 넣는 데에는 정부도 있지만, 은행들도 있지만 VC나 PE나 신기술사업같이 핵심적인 사업을 선별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해서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투자전문회사 VC나 PE나 신기술사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이럴 경우에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저희 돈이 들어가면 의결권에 제약을 받거나 자본이 회석되는 것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결권 자체는 제한을 했으나民間에 있는 그런 투자전문회사들은 의결권을 확보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제안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부는 생각하였고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우선 의견 전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쪽 내용에 이어서 21쪽에 금융위 의견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이 산업을 구성하는 데는 지원 대상의 어떤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본체뿐만 아니고 대·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돼 있는 기업에서 예컨대 인프라나 에너지나 이런 회사 또는 구매 금융에 대해서는 상대방,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법률용어로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입니다. 그러니까 첨단전략회사에 지원할 때 저희가 조인트벤처 형태로하거나 VC나 PE나 이런 투자금융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기금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면,民間 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의결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국책사업, 큰 사업을 할 때 저희 돈이 들어가면, 저희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경영권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투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나,民间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民间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치도 봐야 되지만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결권은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 여기서 이 기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에, 제가 금방 읽어 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융위 의견에 있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등도 기금의 지원 대상이라는 얘기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A라는 어떤 핵심기술에 투자할 때 그런 PE가 들어갈 때 그 PE에 시드머니를 넣어 주면 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BDC 관련도 있을 텐데, 제가 구분이 잘 명확히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벤처투자조합 등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 기금도 거기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러니까 기금이 그 벤처투자조합에 시드머니를 넣거나 같이 조인트를 할 때 후순위 투자를 해 주면, 그 사람이 민간자금을 이만큼 조달을 해 오면 그 자금이 그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BDC 말씀하면 BDC는 집단투자기구…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BDC와 같은 체계도 있고 우리가 벤처투자법 등등에서 지금 모태펀드를 필두로 해서 들어가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금은 언뜻 보면 우리가흔히 말하는 반도체, 무슨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등 국가가 앞으로 미래전략, 첨단전략 산업으로 있는 기업에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불확실성을 공공부문이 일부 떠맡아서 투자를 견인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것을 자꾸 확대하다 보면, 기왕에 타 법제에서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투자가 가능한 장치를 여기서도 또 지원 대상으로 넓히기 시작하면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복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왜 첨단전략산업이라고 했는데 벤처가 또 그런 영역에 한다고 해서 벤처에 관해서 벤처투자조합 이런 데도 그 투자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되느냐, 좋다는 데서 각 영역에서 전부 법령을 만들고 기금 만들고 자금 쏘아 대고 이렇게 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명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차별화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이클(vehicle)들은 PF나 벤처조합 그다음에 신기술 사업, 나중에 논의할 BD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한국의 다양한 벤처나 혁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이클에 불과한 겁니다. 이 비이클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첨단전략산업 업종 대상이 될 경우에 과연 이 기금이 거기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어떤 입법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모태도 있고 성장도 있고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 펀드들 간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속 좀 검토를 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중복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벤처정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입법의 취지가 의결권 제한하고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첨단전략산업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인데 사실 반도체라든지 등등 있지만 또 AI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AI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런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지금 VC가 들어오고 같이 조인트했을 때 의결권을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VC라든지 다른 민간에서 들어올 때, 조인트벤처 할 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의결권 제한을……

○**강민국 위원** 의결권 제한을 자기들이 원하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요, 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 기업이 의결권 제한……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의결권 제한을 하게 되면 이제 벤처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의결권 제한을 좀 풀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지요? 그 취지가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제한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해 달라는 거고요 일부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좀 풀어 달라 그렇게……

○**강민국 위원** 난 부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의결권 제한이 없잖아요.

○**박범계 위원** 제한을 받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의결권 제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민국 위원**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의결권 제한을 풀어 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방금 말씀이 내가 조금 헛갈려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등등, 사실 삼성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AI 같은 기업들은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 입법의 취지에 맞게끔 의결권 행사를 저는 제한해야 된다는…… 아니, 그렇게 풀어 줘야 된다는 그 취지가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지금 부위원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한 부분을 좀 첨언하면 원래 지금 개정안 29조의9 여기에 보면, 26쪽에 보면 자본시장과 금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기에 돈을 출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아니고 여전전문금융법에 만든 신기술사업조합,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벤처투자조합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왜냐하면 집합투자기구들이 이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똑같이 첨단산업에 투자할 건데 지금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는 여기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얘기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지 벤처투자조합에는 똑같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도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금융위는 이 조항을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자금, 기금으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유동수 위원** 의결권이 없는 게 아니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해도 여기에 의결권 행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민간들하고 같이 투자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하고 같이 하는 SPC나 조인트벤처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 주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법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능하면 빨리 한번 줘 보십시오. 기존의 개정안하고 방금 금융위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주시고 추가로 금융위의 수정사항이 왜 필요한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26쪽에 있는 내용은 다 좋은데 제가 우려한 대로…… 여러분이 늘 유념해야 될 게 첨단이라고 모든 게 용서되고 벤처라고 모든 게 용서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퍼블릭 섹터에 돈이 들어감으로써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도 굉장히 만연해 있다 그것을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흔히 말하는, 아까 정말 창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불확실한 영역에 걸치기로해서 여기에서 또 다른 투자의 기제를 만든다? 내용은 그럴 듯하고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중복에 있어서 지원 메커니즘이 자꾸 작동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그게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리스트를 한번 줘 보시라. 이것 법령 내용은 다 좋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존 개정안대로 가면 뭐가 누락이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은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장치에서 왜 작동이 될 수가 없는지 등에 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러면 위원님, 담당 국장이 한번 설명을……

○**추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신진창입니다.

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법은 첨단전략산업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반도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AI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신기술조합도 결성할 수 있고 벤처투자조합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이클(vehicle)이 자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유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듯

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펀드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반도체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도 자금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맨 앞단에 서 있는 선도 대기업만이 아니라 맨 후단에 있는,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도 지원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 이해했어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추경호 위원 여러분이 설명하시는 것은 일종 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나 정부 전체 프로그램 차원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목적으로 퍼블릭 섹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 그게 없으면 당연히 포섭을 해야지요. 그러면 기왕에 그런 목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그런 목적으로 정부 쪽에서 첨단과 관련되어 있는 벤처기업이나 그런 쪽의 신기술과 관련돼 있는 투자를 지원하는 장치가 가동되는가하고의 중복 가능성은 봤느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밸라내 가지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A 정부기관에서는 이것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고 돈을 써 오는데 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관여하지 않는 다른 부처의 B·C·D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많은 자금 지원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의 중복 가능성 등등에 관해서 한번 밸라내 가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특성화해서 필요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짜야 이게 제대로 지원되는 얘기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유동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강일 위원 말씀이 아주 합리적이신 말씀인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벤처 생태계는 크게 보면 모태펀드도 있고요, 저희 금융위가 하는 성장펀드도 있고 다양한 정책펀드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부 정책자금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준현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너무 중복되지도 않아야 되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건과 별도로 벤처정책 차원에서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자금 펀드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강민국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 들으니, 저도 옛날에 사실은 아주 이른 나아이에 벤처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면서 제가 오버랩되는 게 있습니다. 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의 펀드나 기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펀드나 기금들의 성격을 잘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원을 해서 어떤 기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시장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점이 있어야 시장에서도 어디에 적합한 것�이 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의결권 부분에 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만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을 꼭 조항에 넣어야 되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마 상대방 회사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받으면 희석화가 돼서 경영권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장치가 있어야지 필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예외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이게 약간 좀…… 왜냐하면 그 예외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하면 또 두려움을 똑같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자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경영권을 찬탈하거나 위험에 빠트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ESG 경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국가의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ESG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도 좀 미래적이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선매수권에 대한 것도 아예 마이크 잡은 김에 좀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매수권 부여가 그러니까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어쨌든 시장이나 어디에서 매각을 할 때 기존 주주한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것을 명문화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이해가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이게 매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이 전략기금에 민간을 매칭하는 것인데 우리가 돈과 기술을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서 모태펀드를 말씀하시고 성장펀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돈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비이클, 즉 생태계가 있다. 첨단전략산업과 그 산업의 구성이 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그 기업을 백업하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다. 그중에는 기술기업, 벤처·기술기업 등등이 많이 있다. 그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펀드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모태펀드, 성장펀드 예를 드는데 돈에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것 아니고 기술·벤처 혁신기업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전략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기업들이 있고, 큰 규모의 그것이 있고 그것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술기업들이 있는데 이 벤처·기술기업까지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돈에다 돈을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만약 돈에다 돈을 넣는 것이 되면 아까 매칭하는 50%의 민간자금에도 지금 이 대상이 되는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인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런데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이클들이 벤처나 신기사나 이런 PE가 있기 때문에 그자들이 그 기업에 투자할 때도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강준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범계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모태와 성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범계 위원 별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아까 자꾸 모태와 성장펀드를 썼기 때문에 용어 혼란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이 있어요. 이 조합도 지금 50% 매칭이 되는 민간 영역에 투자할 수도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그러면 투자를 하는 이 조합에 또 이 기금, 정부 섹터의 이 전략기금으로 이 투자조합에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박범계 위원 그것이 약간, 추경호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지요? 다르지요?

○추경호 위원 둘 다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박범계 위원 저는 논리적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소위 중복 내지는 조금 이율 배반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벤처투자조합이 나예요. 내가 50 대 50에 매칭이 되거나 100조짜리 AI 국가 대정책에, 대시책에 나도 동참하고 이것이 수익성이 높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내가 내 돈으로, 내 투자조합 내 돈으로 50%에 참여해. 참여하는데, 지금 말씀은 나머지 50%, 공공 섹터에 있는 이 50%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이게 약간 모순관계에 있지 않아요? 팬찮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 정부 생각은, 지금 논의가 조금 중복되고 있는데 모태나 성장이나 기존의 펀드는 논외로 하고요. 새로운 기술에 어떤 VC나 PE가 투자할 때, 그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어떤 자금 조성을 할 때 이 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명확하게 하자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펀드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무튼 옳은 것이라고 하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으로 그러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 듣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지금 산업은행에 이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지금 첨단전략산업에 기 대출 내지 투자한 현황을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은 아마 산업은행……

○유동수 위원 그것 한번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또 이 기금 올해 10조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하고 기존의 대출 내지 투자와는 조금 달리 차별화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민간과 같이 수요조사를 해 본 게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별로는 하지 않았지만 섹터별로는 민간에……

○유동수 위원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자금을 받아 보니까……

○유동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한 10조 정도 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 정도면……

○유동수 위원 그렇게 나온 게 있다 그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금년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 부분도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금년에 10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은행은 금년에 지금 그중에 얼마 예정을 하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만약에 이 전체가, 저희가 전체 설명은 100조 정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추경호 위원 50조고 50조 원은 민간에서 매칭하고 그래서 총 100조인데 50조를 5년 간 한다, 그래서 금년에 10조 이렇게 했고, 금년에 10조를 할 때 산업은행은 그 기금에 출자를 얼마 할 예정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한 2조 정도가 들 것 같은데……

○추경호 위원 금년에 그러면 한 이삼천 억?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기 정도 자금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산업은행이 금년에 한 이삼천 억 부으면 됩니까? 그 정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신진창 5000억이라고.....

○추경호 위원 5000억? 이삼천 억에 저기는 끄덕끄덕하고 여기는 또 5000억.....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처음에 좀 많이 넣어 주시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수 위원 처음이니까 많이 태워야지요.

○강민국 위원 5000억.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의11에서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2명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상정·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이 장관회의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은 부적절해서 삭제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단,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관련해서는 3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29조의11의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1호에 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4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게 저희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이 조문이 없더라도 정부 내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거친다든지 긴밀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훈령에 있는 기구를 법에다 인용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법체계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할 때는 관계부처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36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특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유사 기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참고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부분인데 한국산업은행 및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기금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면책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기금의 관리 주체로서가 아니라 은행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 발행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명채권 양수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에 따라 보유하게 된 채권, 주식 등의 처분 또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사업지원회사등 자산의 위탁 매각 시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계약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이 부분 특례에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42조 1항에 대해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의결권 배제, 주식 제한’ 이 부분 혹시 이번에 상법 개정하고 연결돼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특별히 그렇게는 없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거 의결권을 배제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추가적인 특례기 때문에 혹시 배당 문제는, 거기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주식배당 문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것은 특수목적 기구,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대규모 상장을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역의 어떤 자율성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영역의 자율성으로 보기에는 혹시라도 주주 충실의무하고 연결돼 가지고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꿈꼼하게 검토되었는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의결권의 예외만 정했지 개정 상법의 충실의 의무 자체를 저희가 특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상법은 여기에도 일단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배당 문제가 있을 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관련성은 없다는 거지요?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되지 않게 상법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리고 이 특례 관련해 가지고 3항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연 2% 정도의 대출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례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저희가 국가계약법 관련해서도 특례 적용 규정으로 두었잖아요? 이것은 좀 과도한 특례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그동안 기금을 만들거나 이런 대규모 공공적 목적의 국책기금의 경우에는 통상 이러한 조문이 다 들어가 있는 과거에 만든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과거에 있던 위기대응기금하고 지금 첨단지원기금하고는 실질적으로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도 사실 미래에 대한 위기 측면에서 운용의 효율성이 필요한 유연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창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책임성 문제나, 아까도 29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매수권이나 실제로 의결권 없는 부분을 특례하고 비슷하게 둔 것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적인 책임성에 대해서, 기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투명함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단들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 이외에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 부분도 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특혜 우려가 높기 때문에 관련된 조항이 좀 더 섬세하게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100% 동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용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제도 자체는 어차피 저희가 산업을 행을 통해서나 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어쨌든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장치는 저희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무위나 국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그런 선택과 집중도 잘 해야 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분야에 유념해서 잘 운용하도록 해서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기금을 잘 운용하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저도 이 법안의 필요성은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인정을 하는데 그간의 기금 운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국가의 기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거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도 명확하게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아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에서도 투명성·공정성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제적인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지는 않고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담아 두는 시행령으로써 보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한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든지 지금의 저희들,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이 부분을 사전에 통제해 가지고 이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시행되고 나서 사후에 평가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조성했던 많은 기금들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지적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이 기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방금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이게 기본적인 숙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기간산업기금은 위기에 대응한 한시적인 기금이고 이것은 20년이라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거다 그리고 국가가 특정한 영역, 첨단전략 산업이라고 지칭은 하지만 특정한 영역에 지원하는 대규모 공공기금이다, 이것은 사실은 근자에 있지 않은 과거 개발연대, 우리가 항상 산업을 키울 때 있는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쪽 지적을 다 하는 겁니다.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창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험·도전에서 우리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운다 이 필요성에 공공부문이 한번 견인을 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체계가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있는 게 여기에 대한 공공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사를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돈 들어갔는데 왜 그냥 내버려두느냐, 아마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국회나 언론 등으로부터의 문제 지적이 있을 겁니다. 이들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직원들에 대한 문제, 그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문제, ‘정부 돈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하냐’ 하는 것부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기에도 민간보다 엄청난 더 나은 보수체계를 갖고 가야 미래 신세계를 여는 거다’, 이런 양쪽이 다 충돌하는 영역에서 지금 이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지적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숙제가 많은—집행 단계에—그럴 영역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유념하면서 가야 될 거다, 공공성과 민간성이 지금 양쪽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양쪽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별로 조화롭게 갈 수가

없는 그런 논쟁적 지점이 많이 생긴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저는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예를 들어 아까 해마다 10조 정도 하는데 돈을 실제로 쓰게 되는, 집행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다 무르익어야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조성은 해 놔 놓고. 그러면 돈이 일찍 기업으로 나가지 않고 실제 필요할 때 집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일단 기금을 발행해서 자금 운용은 산업은행이 중심이 된 기금에서 운용하면서 수익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집행하고 그런 구조겠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지금……

○추경호 위원 그래서 이 자금을 필요할 때 제대로 쏴 줘야지 이게 잘못하다가는 중간에, 산업은행이 아닌 중간 집행기관 또는 최종 자금 수요기관에서 이 돈을 파킹해서 금융 차익을 노리는 그런 병리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집행 관리를 특별히 잘해줬으면 좋겠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100% 저희가 동의하고 있고 정말 저희한테 많은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페이지 36쪽의 은행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관계법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유동수 위원 여기에 동의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의견 없으시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4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기간을 기금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으로 하되 자금지원은 기금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금 재원 조성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다 끝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추

경호 위원님 또 박범계 위원님 또 유동수 위원님 등등 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객관성·시의성·투명성 모두가 담보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강준현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에 적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렇게 적시하면 어떨까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 산업기금과 관련한 하위 시행령 개정 및 운영에 있어 핵심광물 공급 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되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렇게 적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강준현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또는 45조 원, 50조 원 또는 60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현행 30조 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말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약 26조 3000억 원으로 현행 법정자본금 30조 원 대비 87.7% 수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자본 여력을 확대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대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그간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연혁입니다.

다음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규모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10년 주기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20조 원을 추가해서 50조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시 고려사항입니다.

현금출자는 국회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현물출자는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 후 한국산업은행이 지

체 없이 목적 및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부분이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는 한 50조 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50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50조 원이요.

○**강민국 위원** 한 10년 주기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강민국 위원** 2014년도에 했는데, 사실 현재 수권자본금 소진 속도상 지금 자본한도 30조가 보니까 2027년도쯤 되면 소진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첨단전략기금도 했다시피 지금 AI나 등등 첨단산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 자본 확충 측면에서 볼 때 또 10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볼 때 저는 60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제 마음 같으면 100조 했으면 좋겠는데 한 60조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한 10년, 20년을 바라보면 충분한 수준으로…… 법정 한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출자하거나 이럴 때는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으로 해 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만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굳이 50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60조 하면 더 좋지요.

○**강민국 위원** 이재명 정부건 무슨 정부건 간에 이런 건 해 줘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까지는 강민국 간사님 말씀이셨고.

다음에 또 손을 들어 주시면……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지금 강민국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충분한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보고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주기가 아니라, 보시면 10년 주기가 아니잖아요. 3년 주기도 있고 5년 주기도 있고 10년 주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10년 주기로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정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30조에서 소진율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40조 수준에서 적절하고 균형감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정말로, 지금 강민국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추가가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금을 확대한 이후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제나 효율성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절한 규모에서 40조 원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저도 강민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합의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50조로 하고, 다만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그 내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두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조, 5조의 차이 때문에 자꾸 여기서 논란이 거듭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이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한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혁을 보면 3년 그리고 11년, 5년, 이번에 하게 되면 11년 만에 다시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결국 어느 정도 할 거냐는 앞으로 쓰이게 될, 물론 이건 한도니까 그것에 따른 일반적인 추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인 것을 반영해서, 마음 같아서야 더 크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절충안으로 제가 45조 원으로 제출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의 정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부위원장님, 법정자본금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자본금을 무작정 키우는 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보증 한도를 법정자본금의 몇 %를 하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납입자본금의 25%가……

○**유동수 위원** 보통 법정자본금의 40%를 보증 한도로 수출입은행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정자본금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증액에 실링을 씌우는, 그렇게 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커지는 게 산업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재정으로 증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LH 주식 가지고 2조 넣어 췄던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게 얼마나 위험한 투자인지 아시지요? LH에 넣을 때 2조 가지고 출자해 주고, 2조 가지고 LH 출자할 때 한 번 써 먹고 또 LH가 산업은행에 출자할 때 2조 써 주고 그러면 또 산업은행이 다른 데 출자할 때 LH 넣어 주고, 이게 순환출자 구조를 갖게 되면 리스크를 굉장히 키우는 겁니다. 정부재정으로 현금출자할 자신 없잖아요, 부위원장님.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유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재정 형태로 여기다 10조씩 현금출자할 여력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차 오기 때문에, 10조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출입은행도 15조~25조 이 정도, 10조 정도 증자는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조도 충분하고 10조면 충분히 22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니까, 23대 국회도 할 일을 좀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하여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입법정책적으로’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어올 때 60조, 50조, 45조, 40조 등등의 옵션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다 많이가 기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적정 수준이……

○박범계 위원 법정 한도를 보다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게 지금 기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납득을 시켜야지 그냥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들이 결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실망스럽고, 기회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현재 30조가 한도인데 거의 다 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실제로 납입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도를 넓혀 놓으면 실제로 출자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출자가 되기만 한다면야 외형이, 불륨이 커지니까 아주 기본적인 안정성이 과시가 되겠지요. 그건 상식에 해당하는 것 같고.

문제는 현금출자냐 현물출자냐인데 비율이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현금과 현물의 비율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현금이 2고 현물이 1입니다.

○박범계 위원 2 대 1?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여기 부대의견으로, 과거에 저도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대의견이라는 게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다반사.

그러면 현물출자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돼 있다,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 감시를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담보가 될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정무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부위원장님 바뀌면? 위원장님이 바뀌고 나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부대의견은 계속 가기 때문에 저희가……

○박범계 위원 가는데 안 지켜진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유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돌려막는 것, 순환출자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1000억 가지고 한 번 돌리면 몇천억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부상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현재 정부재정상 도로공사나 LH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빈번하지는 않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한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여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45조 원 주장하시니까 근거와 납득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보다 많이가 좋다 그러면 40조보다는 45조가 좋은 것 같고, 지금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통제 우려는 반드시 보고해서 통제받겠다라고 다짐하니까 45조 팬찮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으로 추경호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우선 현물출자한 경우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출자 후에 사후 보고니까 바로 즉각 보고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이건 부대의견 달아도 계속 이행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법정자본금 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규모가 여기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지점을 찾아야 될지, 40조도 많은 것 같고 45조도 많은 것 같고 50조도 많은 것 같고 60조도 많은 것 같고 또 왜 60조일까, 기왕 하는 김에 한 100조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가 대개 미래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최소한 미니멈 한 5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무언가 논리적인 것을 해야지 여기 위원님들 상대로 무슨 그냥 뽑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규모에 관해서 정확히 지금 타기팅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그것을 정부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는 게 좋고.

두 번째, 저는 이 부분에 관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첨단전략산업기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산업은행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이 첨단기금에서 역할을 많이, 또 포섭을 하는 구조가 하나 탄생한다. 그게 지금 민간 매칭까지 포함해서 100조 원의 투자, 대출 여력, 보증 여력까지 생기는 기금이 하나가 창출되는 거다. 그것 없으면 산업은행에 또 추가적인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쪽에 큰 돈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산업은행이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첨단산업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관한 증자 수요는 거기서 완충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첨단산업기금하고 다른 산업은행의 목적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90% 정도까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조금 더 필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자본금이 모자란다, 그래서 수권자본금을 더 늘리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권자본금을 늘려도 증자를 하는 데 정부가 현금이든 현물을 출자해야 됩니다. 정부가 증자를 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재정 운용하다 보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현금출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한적이겠지요. 그다음에 현물출자도 정부의 여러 가지 보유 주식을 여기에 출자하는 것도 여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 현실적인 이유를 감안하면 10조 정도를 해도 이것을 10조를 채우는 데 얼마나 걸릴지 사실 그것도 장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당장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는 1년 내내 연중 국회입니다.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또 필요하면 그 수권자본금 한도는 언제든지 늘릴 수도 있는 거다.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산업은행이 2012년인가요, 정책금융공사 그것 분리해서 만들었다가 또 2~3년 뒤에 다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때 발상은 뭐냐?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은행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영역에 자꾸 투자하는 것, 대출하는 것, 이 영역을 조금씩은 선별을 해야 된다. 개발연대의 산업은행의 역할을 가지고 자꾸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한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민간의 경제 규모가 커지니 공공에서 자금지원 역할을 계속 강화해야 되겠다. 전 세계 산업은행과 같은 이런 역할을 국책은행이 갖고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과 같은 첨단 미래, 아직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 가야 되는 이런 정책금융기관의 수요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이 기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금융 생태계는 민간금융 생태계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는 또 이런 영역이 자꾸 더 커지면 민간의 영역이 더 커지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계속 여기서 생기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일부 당분간 필요한 증자 수요는 우리가 열어 가되 미래를 그냥 너무 과다하게 열고 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의 근본적인 물음에도 배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역할을 해야 됨에 있어서 선별 기능, 정말 제대로 필요할 때 산업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더 제한적이고 엄격한 역할 수행에도 자칫하면 여기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산업은행도 도덕적 해이가 있지만 정부도 자꾸 공공부문을 통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늘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우리 당에서는 규모를 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10조 정도만 해도 당분간 상당 기간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국회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수권자본금에 관한 길은 열어 놓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왜 그것을 국회가 제어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도와주고 지원하려고 그러지.

그런 면에서 10조가 맞는지, 15조가 맞는지, 20조 추가 증자분이 맞는지 저도 판단은 안 쉽니다.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들 계실 때 대개 앞으로 한 5년 정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 분 이야기하다시피 자본금을 10조 늘리면 100조의 대출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원.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규모 이것을 한번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10조든 20조든 30조든 위원님들하고 판단을 하겠다. 그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금융위원회에서 그것을 답변 좀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니까 본 위원이 왜 60조, 그냥 크게 해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산업은행 정책자금이 연간 100조 이상 공급되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2033년에 산업은행 총자산이 보니까 430조, 425조 수준이더라고.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 증가에 대한 적정 BIS 비율이 15%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 정도 필요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약 20조 원의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조인데 이미 소진이 다 끝났고, 구십몇 %가. 그러면 10조 늘려 본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지금 글로벌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를 설정하는 건데 저는 10조, 15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산 증가에 대응한 적정 BIS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0조 원 정도 수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논리로 딱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60조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냥 산업 수권자본금 한번 해 줄 때 해 주자 이런 그냥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명쾌한 정확한 답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수석부행장님 나와 계시나요? 산업은행 수석……

○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김복규 제가 설명을……

○강민국 위원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복규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정하기에 2033년까지 425조의 자산이 예상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BIS 비율 15% 맞추기 위해서는 20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간 자본금이 약 10조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명목 GDP가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도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매년 100조 이상의 자금 공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수치를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20조 정도는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5~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2시간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다가 속개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께서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고하게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김복규** 예.

○**소위원장 강준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본금 관련해서 전자에 많은 의논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현재 납입자본금이 27조 원이기 때문에 30조 원인 법정 자본금의 한 88%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을 위해서는 좀 늘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아까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행의 10년 중장기 전망을 보면 현재 한 340조 원 대출 규모에서 425조 원 정도로 좀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성장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최대 한 50조 원 규모가 일단 적정하다는 그런 추산은 했습니다만 현재의 재정 여건이나 특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간과 정책금융의 어떤 역할, 과도해서도 안 되고 과소해서도 안 되는 그런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돈을 좀 벌어서 자본금을 증자시키는 그런 노력 등을 배가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45조 원 정도로 결정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지금……

○**박범계 위원** 한창민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한창민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거기에는 의견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현물출자 관련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단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대의견이라는 것도 지난 이후에 그냥 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충분하게 사후에도 보고가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도 같이 좀 보완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부칙을 안 했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8페이지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6개월’ 안과 ‘공포한 날’ 안이 있는데요. 이 개정안 같은 경우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개정안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도 정관을 변경하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산업은행은 법 개정 시에 자본금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박상혁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해서 3개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정부안은 40%, 이현승·김승원 의원안은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합투자업 신규인가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되 대주주 요건은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설정·설립 요건과 관련해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형태로 하고 5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하는데 최소모집가액과 관련해서는 정부안과 이현승 의원님 안은 500억 원, 김승원 의원님 안은 1000억 이하입니다.

다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증권을 3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90일 이내 거래소에 의무 상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처·혁신기업은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 수단을 통해 비상장기업 등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6페이지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현승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주투자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승원 의원안은 추가로 기업성장투자업자로 하여금 분기별로 1회 이상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 투자 비율입니다.

정부안은 40%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김승원 의원안과 이현승 의원안은 50%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데 금융위 의견은 50%로 규정하는 이현승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에 동의하고 향후 시행령에서 60%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최소모집가액의 규모인데 정부안과 이현승 의원안은 50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김승원 의원안은 100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금융위 의견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시장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모집가액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번의 액수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7페이지 최소모집가액에 대해서……

○**이강일 위원** 500억이나 1000억이나.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7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위원** 정부 측 의견은 어떻게 돼요?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는 '50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 주시면 두 의원님 방안을 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500억 원으로 하게 되면 쪼개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쳐 왔는데 그 위에 지금 40%, 50%, 앞으로 6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는 한 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60% 생각하고 있다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강일 위원** 앞으로 더 상향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한 60% 정도.

○ 이강일 위원 시행령으로……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 이강일 위원 하여간 저는 500억이라는 부분이 너무 쪼개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할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어차피 500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니까 저희가 시행령에서는 한 300억 정도로 정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일 위원님, 팬찮으시겠어요?

○ 이강일 위원 예.

○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21페이지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 규제 관련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통상의 자산운용 규제 대신에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분산투자, 안전자산투자, 유동성관리, 기업평가의무, 벌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의사항입니다.

동일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한도가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안은 20% 이하, 이현승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은 10% 이하—지분증권,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대출 각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현승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업성장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순자산의 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금전차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현승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은 금전차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현승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기업성장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전대여를 허용하고자 하는 반면에 이현승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은 투자금액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대여를 허용하는 입장인데, 금융위원회는 이현승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현승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81조 5항 6호 기업평가의무 관련해서요,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예정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도 저희 자본시장에는 기업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계량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고 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외부의 어떤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외부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이나 이런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 부분은 결국은 또 시장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꼭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알겠습니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료 28페이지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문인데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안전자산을 국채증권으로 보고 있고 김승원 의원안은 국채증권뿐만 아니라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현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김승원 의원안처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김승원 의원님 안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의견 없으십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시행일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인데 하위 법령 준비 등 법률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3건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김남근 의원·김현정 의원안의 경우에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는 경영개선조치 강화를 하는 내용이고, 강민국 의원님 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범위 및 적용 대상 명확화, 정산자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도입, 자본금 요건 상향 등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범위 변경 및 명확화입니다.

개정사항 첫 번째, 정의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PG를 제삼자 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PG업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수수 없이 지급정보만 송수신하는 업무와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급정보만 송수신하는 업무—VAN 서비스를 말합니다—는 결제대금 등의 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PG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규모유통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가맹본부, 여객터미널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부수되는 일종의 내부정산으로 보아 PG에서 제외하고 각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항 2, 법 적용 제외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에 따라 PG업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PG업에 적용되는 경영지도기준과 망분리, 데이터백업 등 보안 관련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PG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어 경영지도기준과 보안 관련 규제를 계속하여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정에 따라 PG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9개 사의 경우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강민국 의원님 대표발의입니다—이 통과될 경우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해당하여 정산기준 준수,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의 의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정의 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전자금융 업무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3페이지입니다.

PG업자는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산대상금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표를 보시면 정산대금 범위에 결제사 등으로부터 정산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과 이용자의 결제취소로 판매자, PG사 등으로부터 환불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하고 판매자, PG사 등에 지급이 완료된 금액과 PG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외부관리의무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외부관리는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한 신탁·예치·지급보증의 방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외부관리해야 하는 정산대금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1년부터 정산대상금액의 60%, 공포 후 2년부터 정산대상금액의 80%, 공포 후 3년부터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외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관리 정산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의 상계 또는 가압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조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가 PG업자 정산대상금액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조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PG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체결 시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행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의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제가 또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개정안에 외부관리해야 되는 정산대상금액의 비율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가 약 40%니까 1년 후에 60%, 연차적으로 80%, 100%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단 60%로 호흡을 가다듬는 기간 1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만약에 지난번 위메프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처럼 이게 100% 담보 안 되면 누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사실은 바로 100%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의 적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간은 한 60% 해라 이렇게 아마 권고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순차적으로 20%p씩 상향 조정하는데 이것을 1년 뒤에는, 1년간 일정 부분 중간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일종 이해가 되나 그 이후에는, 최소한 1년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되면 정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좀 없도록 장치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무슨 사태가 생기면 우리가 제도를 새로 만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100%를 하면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유동성 비율을 한 40%로 규율해 왔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이 현재 한 40%는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100%로 하면 위반하거나 따라올 수 없는 법의 어떤 집행력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혹시나 그 와중에 티몬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감독원을 통해서 전 PG사들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티몬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적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0에서 60이든 70이든 설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간 단계. 그런데 그 사태가 있고 지금 법제도도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제도 세팅을 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그 중간에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국회나 정부가 이렇게 느슨하게 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 같으면 사태가 있은 지도 벌써 1년여가 됐고 또 시행하고 1년쯤 중간 적용 기간을 일단 우리가 두고 있고 그러면 그 이후쯤에는 정산자금은 별도로 해서 소비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슨하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우리가 그걸 좋아합니다마는—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법을 따라오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은 강제적인 규정이고 잘못됐을 때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법 시행 이후 60%지만, 저희가 내년 1일부터 60%로 일단 지도를 했습니다.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보다 더 빨리 60을 가 보고 저쪽의 수급 능력을 보면서, 법은 최소한이니까 저희가 그보다 좀 빠른 속도로 가능하면 100%로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저도 추경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논의를 한 게 작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던 거고 준비기간에 대한 충분한, 그다음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시행하고 1년 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60%에서 단계적으로 2년 80%, 3년 100% 한다는 것은 우리 대책이 너무 느슨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단계를 3년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현재 한 180개 업체가 이걸 얼마나 따라올지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선 이렇게 법을 정해 주시고 부대의견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빨리하라고 저희한테 의무를 주시면 제가 보기에 한 2년 내에 80, 100을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180개 업체의 현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래서 혹시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맞추도록 하는데 저는 가능해는 보입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데 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예기치 못한 위반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당국에서 걱정하는 부분 잘 알겠고.

여기 부칙인가요, 뒤에 보면 2조에 법 시행 이후부터는 정산대금의 100분의 60 이상 그다음에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80 이상으로 돼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상이니까 가급적, 이상은 100까지 가도 된다는 거니까 기본, 최소한은 80으로 두되 오늘 부대의견이나 이렇게 해서 가급적 조기에 100을 달성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속도를 좀 내 주는 것을 우리가 부대의견에 넣고 그렇게 소화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으로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일 위원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바를 저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당기고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빨리 당기고 퍼센티지를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업체가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는 것 이외에 이들이 자본금을 확충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비자의 대금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 이 법이 재촉을 해서 좀 빨리 가게 되다 보면 시장에 너무 많은 업체가 매물로 나오든가 어떤 다른 형태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데에 내몰리게 되면 평가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의도치 않게 터메프 사태 같은 것을 우리가 몇 개라도 촉발시키는 상황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 실질적인 대책이 그것 이외에 더 필요해요. 그것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 규모가 좀 크면 증자를 하도록—나중에 검토를 하시겠지만—증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규모를 키우면서 유동성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이 법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되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추서를 할게요.

작년 내내 그것 가지고 티격태격했는데, 징후가 보이면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먼젓번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금융위에다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이번 티메프 사태도 보면 알겠지만 사전적인 징후가 한 2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금융당국에서 모른 게 아닌데도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티메프가 사고로 귀결이 돼 가지고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선제적인 조치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 또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끝으로 유동수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게 정산대상금액이 매일 변할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유동수 위원 매일 변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물건 파는 것, PG사가 하는 중개에 따라서 정산대상금액이 매일 변하는데, 그렇지요? 정산대상금액의 60%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 언제 기준이에요? 연말 기준입니까, 아니면 매월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유동수 위원 실시간으로 하면 매일 나오냐고요, 이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철회권이 있는 기간을 어떤 기간일만 정해 주면……

○유동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환불 목적으로 오는 금액도 있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 부분은 좀 빼든지, 수수료는 빼든지……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수수료 있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 특이한 요소는 저희가 법 시행령에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유동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잘 챙겨 보시고.

두 번째는 이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잖아요? 제 생각에는 비례원칙에서 유혹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만 원 내고 말지 뭐 이렇게.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거래금액이 굉장히 큰데 과태료 5000만 원 위반하고 내지 뭐, 이렇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그것은 질서법 측면에서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 돈을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하면, 즉 불법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것이……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형벌이 같이 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13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관련해서 개정안은 50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검토의견 보시면 유사 사례인 선불충전금의 경우 별도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외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해서 정산대금 외부관리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 안을 넣어 줘야지 행정별로 더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자본금 요건 상향입니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PG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규모가 큰 PG업자 등에 대해서만 선불업자 수준으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증가하여 상위 자본금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기간 내에 상위 자본금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호에서 2호, 2호에서 3호의 경우에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1호에서 바로 3호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조치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개선 시정조치가 있고 적기시정조치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영개선 시정조치와 적기시정조치를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31페이지의 각 조치 대상 비교를 보시면 강민국 의원님은 등록업자에 경영개선 조치를 적용하고 김현정 의원님은 경영개선 조치, 적기시정조치를 등록업자에 다 적용을 하고 김남근 의원님은 대형 등록업자에 대해서 양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경영개선 시정조치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등록 금융업자에 대해 경영개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적기시정조치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인허가 및 전업주의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달리 겸업주의가 적용되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 시정조치 사유 확대입니다.

현재는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에만 경영개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별도관리기준, 외부관리기준 미충족 시에도 경영개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반복적 업무정지에 따른 허가와 등록의 취소 관련입니다.

경영개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도 업무정지 기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을 받은 때에는 등록 및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의무화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위반 시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공시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다 동의를 하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쪽에, 경영개선 시정조치라 하는 것은 시정해라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정지가 안 되면 저희가 취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산자금을 외부에 예치했기 때문에. 이 수단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예금 업무를 하거나 대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너무 과한 측면도 있고 실제 실효성이 없다, 저희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기시정조치는 저축은행이나 이런 고유계정에서 여·수신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한테 주로 부여를 하고 있고, 적기시정조치라 하면 통상 자본금을 증자해라, 자산을 매각해라 이런 조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정산 업무만 대행하는 업체에 적기시정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없더라도 경영개선 조치로서 충분히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창민 위원** 지금 부위원장께서 적기시정조치 없이도, 경영개선 시정조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그게 지금까지 증명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그 부분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오랜 기간 적기시정 제도를 거의 한 30년 이상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축은행이라든지 MG손보라든지 무궁화신탁이라든지 이렇게 타인의 돈을 자기가 고유계정에서 운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라는 이런 조치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100% 외부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를 할 만한 실익이 없습니다. 자본금 자체도 10억, 20억, 30억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켜 버리고 등록취소를 해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하는 판단입니다. 법체계적으로도 등록업체 또는 여·수신 업무를 하지 않는데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의견대로 진행되다 보면 그 부분에도 좀 책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고 적기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 측……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강준현** 검토의견 2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위원장님, 자료 33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추가 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수준이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있는데요. 과태료 수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과태료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현행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은 2000만 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2000만 원 정도가……

○**추경호 위원** 왜 2000만 원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수준을 비교해 보면 위반의 경중을 감안했을 때 2000만 원 수준하고 저희는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런데 수준으로 따질 때도 어느 정도 과태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도 매우 낮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5000만 원 이하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유사 입법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컨대 P2P법의 정보공시의무 위반이라든지 은행의 경영 공시 위반은 일단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전금법은 통상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0만 원 보시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나 기록을 파기한 경우,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일단 2000만 원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별로 무섭지는 않겠네. 별로 무섭지는 않겠어.

○소위원장 강준현 2000만 원이요?

○박범계 위원 2000만 원으로 하는 경우에 별로 무섭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준현 무섭지 않겠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요?

○추경호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은?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5000만 원 같은 경우에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무 위반이라서 지금 현행 규정을 감안하면 2000만 원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공시의무 위반이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2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정산대금 기한 내 정산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관련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 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선불충전금 정산대상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형법상 배임에 준하는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상훈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대가를 정산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2000만 원 과태료고요 아까 공시의무 위반도 2000만 원 과태료인데,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기한 내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이 법의 본질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짠값이면 이게 되나?

그리고 기한 내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밑에 있는 것처럼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정산하겠지.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을 하려고 정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형사처벌 법정형이 10년 이하로 돼 있어요. 이건 형법의 일반 업무상 횡령·배임, 그러니까 단순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인데 업무상 횡령·배임하고 같은 수준의 높은 처벌이에요. 벌금을 보세요. 1억 원이고, 일반 업무상 횡령·배임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과태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공시의무 위반 정도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위반한 건데 기한 내 정산하지 않는 경우는 본질적으로 이 법을 위반한 거거든. 물론 처벌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과태료하고는 좀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념 없이 대충 2000만 원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한 규명 없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고민은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리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그래서 만약 기한 내 판매자에게 정산하지 않는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돈을 땐 데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이행하라는 의미로 일단 형사처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과태료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제재로.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50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앞에 2000만 원으로 한 공시의무 위반하고 좀 차별성이 부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일 위원 저도……

○소위원장 강준현 이강일 위원님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박범계 위원님하고 약간 유사한 내용인데 사실은 13페이지에 보면 정산 대상금액 외부관리의무 위반 시 5000만 원 과태료를 하자고 이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40페이지의 기한 내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경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태료가 같아야지요. 비슷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

○박범계 위원 그러네요. 같은 얘기네요. 다시 정리하면, 이강일 위원님 아주 정확히 잘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이 법안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부위원장님, 결국은 정산 대행을 하는데 네가 갖고 있다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외부에 관리를 맡기고, 이것이 일차적인 주의 경고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기간 내 정산하지 않으면 외부관리라는 장치로써 통제되지 않고 땐 데다가 한눈을 파는 경우 일 가능성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그래서 외부관리와 정산은 연동하는 거지요, 동전의 앞뒷면으로. 그러니까 그 쳐별도 과태료도 동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한 번만……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으로 유동수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박범계 위원님이나 이강일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면서 기한 내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예를 들어서 착오든 오류든 어쨌든 여러 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유동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게 1건당 2000만 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양형을 봐서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2000만 원 아니면 50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또 여러 회차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액 베이스로 나가는 것도 하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포괄일죄 부분으로서 동일·유사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가급적 이런 동일·유사한, 그냥 완전히 동일한 시기의 동일 건이면 1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일어났거나 날짜를 두고 일어났으면 별건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건별로 처리하는 게……

○**유동수 위원**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에 따라 하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히 예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에서 예외 사유를 합리적으로 감안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사위 가면 조금 논란이 될 소지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쳐별은…… 정산 대행사가 여러 판매자들, 한 10개의 판매자들을 대행한다 이 말입니다. 동일 기간에 연속해서 정산하지 않는 경우 먹튀를 한다 또는 외부에다 자금 돌려 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 하나의 포괄일죄로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것은 형사처벌이니까 구속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일죄로 처벌되는데, 과태료 처분은 개개의 업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가 위반해서 정산 못 해 준다 하면 사고의 조짐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오나 또는 약간의 해태, 약간 태만해 가지고 한 업체에 정산을 안 했다 그러면 ‘너 5000만 원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노티스가 돼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이행을 하면 그만인데 연쇄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다 같이 강구돼서 아주 엄하게 처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일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건별로 다 살펴 가지고 가급적 포괄일죄가 아닌 쪽으로 과태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굉장히 포괄일죄적 성격이 있는 부분은 고려할 수 있게 저희가 내부 기준

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겠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박상혁 위원** 하나만 말씀……

○**소위원장 강준현**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저도 박범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혹시나 발생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없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착오 또는 단순 과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기한 내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명한 신호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 착오나 과실의 여지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서 부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천재지변이 났거나 전시·사변이나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가맹사업법이나 국세기본법, 여러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종에 맞는, 의도하지 않은 범죄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검사를 하고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의 정도라든지 위반의 의도, 과실 여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위반 기준을 가지고 적당한 제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강준현** 이제 끝으로 마지막,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지금 전자금융법상 PG는 정산금 100%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상의 플랫폼사는 지금 정산금 50%를 보전하게 돼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같이 겸업하면 어떻게 돼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법이 적용이 되면 100%가 해당이……

○**유동수 위원** 100%로 하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100%로 하겠다.

두 번째,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아마 현실을 감안해서 50% 정도로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겸업을 하는 것을 일단 지도를 통해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재될 수가 있거든요.

○**유동수 위원** 어쨌든 외부자금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100%……

○**유동수 위원** 100%로 가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전금법으로 가든 대규모유통업법이든 그렇게 겸업하는 사람들도 외부자금에 대해서는 100%로 하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래서 겸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까지……

○**유동수 위원**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도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진짜 끝으로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이것은 몰라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VAN 서비스는 여기서 제외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범계 위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아서 제외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산 대행이라는 게 고유 목적이 아닌 자기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종의 정산 대행을 내부 정산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도 제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등록이 유지되는 PG업자는 한 171개사쯤 되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건 다른 측면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받은 돈을 다른 데 못 쓰도록 예치시키고 또 압류금지하고 양도금지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업체들이 유지가 됩니까?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규율하고자 하는 PG업은……

○**박범계 위원** 물론 알아요. 워낙 폐해가 컼고 사태가 커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171개사는 그냥 수수료만 따먹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망해도 할 수 없는 거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저희가……

○**박범계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태계를 내가 잘 몰라 가지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매개로 대형 금융사고가 안 나게 막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대규모 유통업체,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의 이슈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박범계 위원** 거기서 규율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거기서 규율하는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50% 정도 외부 예치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마 5시 10분부터 당내에 다른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티페프법이 중요해서 계속 심사……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정산대상금액 기한 내 정산의무 위반 시 제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5000만 원으로 결정……

○**소위원장 강준현** 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동의하십니까, 5000만 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등록 의무화입니다.

대주주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위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자등록 관련 규정 뒤인 제33조의3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경등록 신설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문구 수정입니다.

현행법 32조 제5호에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 대주주 변경등록이 신설되면 ‘등록 신청일(대주주 변경등록 신청일을 포함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변경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자료 48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 관련되는 부분인데 강민국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포한 날’이 있고 ‘공포 후 1년’이 있는데요. 공포 후 1년에 보면 PG 정의 부분이 있어서 PG 정의 관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민국 강준현 김상훈 김승원 김재섭 김현정 박범계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양수 추경호 한창민

○출장 위원(1인)

이현승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한국산업은행

전무이사 김복규

기획관리부문장 이근환